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0,130,000	20,403,900
일반회계		615,100,000	18,453,000
특별회계		65,030,000	1,950,900
	기타특별회계	65,030,000	1,950,9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50,000	25,5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9,360,000	580,8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000	2,10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610,000	318,3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0,000	1,800
	치수사업특별회계	1,130,000	33,9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70,000	182,1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880,000	806,4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282,55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